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9.(월) 12:00 (2026. 11. 10.(화) 조간)

㈜아워홈 산업안전·근로기준 합동 감독·점검 결과 발표

- 감독 결과, 92건 위반 13건 사법처리, 과태료 8천 6백만원 등
- 컨베이어 끼임 방지조치 미실시, 체인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사고 예방조치 미흡
- 안전검사 미수검 컨베이어 사용, 1-2차 협력업체 간 불법파견도 적발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'25년 4월에 이어 **'26년 6월**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㈜아워홈을 대상으로 '26.6.16.~10.30. '산업안전-근로기준 합동 감독·점검'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
[중대재해 개요]

- `25.4월 용인2공장: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원청 노동자 사망
- `26.6월 용인2공장: 포장 컨베이어에 위생모가 감기며 목이 끼여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

노동부는 **최근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**를 고려하여 ㈜아워홈의 **전체 공장 9개소**를 대상으로 감독·점검을 실시했으며, 올해 사망한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.

감독·점검 결과, **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 사용**, **믹서기 투입 개구부 방호울 미설치**, 협력업체 노동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 **위반사항 총 92건**(산업안전 53건, 근로기준 39건)을 적발하였다. 아울러 사내 2차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**불법파견 사실**도 확인하였다.

[감독결과 종합]

구분	계	사법처리	과태료	시정조치
종합	92건	13건	37건(8,630만원)	42건
산업안전	53건	9건	37건(8,630만원)	7건
근로기준	39건	4건	-	35건 (경고처분 1건 포함)

[❶ 산업안전 분야 감독 결과]

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53건의 위반을 확인하였다. 이 중 **9건은 사법처리**하고, 37건은 **과태료 8,630만원**을 부과하며, 7건은 시정조치한다.

먼저, '26년 6월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 **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**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 **미수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**하고 있음을 확인했다(2건, 과태료 1,800만원). 감독 대상 9개소 중 **6개소에서 컨베이어** 작업자에게 **특별교육**을 **미실시**하거나(42명) **지연실시**한(4명) 사실이 확인되었으며(7건, 과태료 2,350만원), 46명 중 44명은 협력업체 노동자였다.

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4건으로 끼임, 감전, 추락 위험요인을 확인했다. 6건은 사법처리, 7건은 시정조치, 1건은 과태료를(30만원) 부과한다.

주요 위반사항은 ① **컨베이어 벨트 사이 끼임 방지조치 미실시**
(→ 벨트와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),

② **두부 제조기 동력전달부 체인 덮개 미설치**
(→ 회전하는 체인과 스프라켓 사이 손·팔 등이 끼일 위험),

③ **믹서기 투입 개구부 방호울 미설치**
(→ 가동 중인 회전날에 손·팔이 말려 들어가거나 절단될 위험),

④ 이동용 전선 미접지(→ 감전 및 전기화재 위험),

⑤ 성형실 계단 난간 미설치(→ 추락 위험) 등이었다.

그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, 안전보건표지 미부착, 특수건강검진 미실시,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3건은 사법처리, 27건은 과태료(4,450만원)를 부과할 계획이다.

[❷ 근로기준 분야 감독 결과]

㈜아워홈 제조공장과 **사내협력업체 17개소**(1차 14개소, 2차 3개소)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, 불법파견 등 **총 39건**의 법 위반을 확인하여, **4건은 사법 처리**, **35건은 시정지시**할 계획이다.

감독 결과 ㈜아워홈과 **1차 사내협력업체**는 상호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, 1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일 생산 수량·작업속도 등 재량을 가지고 1차 사내협력업체 관리자의 지휘·감독 하에 생산 또는 물류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 **적법 도급으로 판단되었다.**

그러나 ㈜아워홈 용인2공장의 **1차 사내협력업체**가 일시·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**총 45명을 불법파견**받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.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.

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**2차 사내협력업체를** 즉시 **범죄인지**하고, 파견 인력을 사용한 **1차 사내협력업체**에 대해서도 근로자 **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**할 계획이다.

그 밖에도,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**24백만원 금품 미지급**,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**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**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시정지시할 계획이다.

[❸ 후속조치]

고용노동부는 올해 ㈜아워홈, 한화에어로스페이스(주) 등 **한화그룹 계열사**에서 **사망사고가 반복**적으로 발생하고, 감독결과 **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례**가 확인된 만큼 **그룹 차원**의 **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·시행**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, **재감독**을 통해 개선사항의 **지속적인 이행 여부**를 확인할 계획이다.

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**대기업**에서, **사망사고가 반복**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**다수의 법 위반**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**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**”이라고 언급하며,

“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는 만큼,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**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**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**근본적으로 쇄신**하여 **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**”이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 주무관	강숭훈 (044-202-8914) 성은창 (044-202-8915) 김대규 (044-202-8909)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	책임자	과 장	이태훈 (044-202-757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윤지현 (044-202-7574) 황혜선 (044-202-7577)